

긴급 복지 지원제도

자료: 보건복지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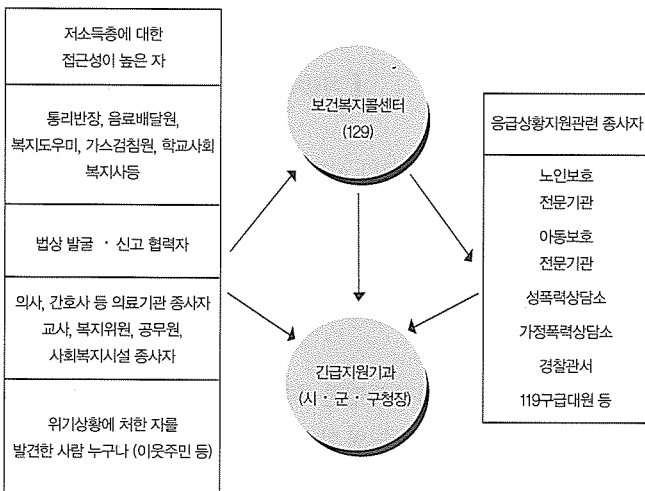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구규모별로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콜센터 상담원이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연락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하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생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 사업체계



◆ 대상자 발굴체계

